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0
----------	-----

제출연월일: 2015. 4.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

나.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 정비

다. 평생학습협의회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협의회의 기능·구성 등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

라. 평생학습관 등 운영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구 단위에는 평생학습관을 동 단위에는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13.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7조)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의회 구성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 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및 학습 동아리 활동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대학,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

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상담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2012년 폐지된 평생학습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주된 내용이므로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성동구 교육지원과 권혜영(연락처 2286-5866)

< 관 계 법 규 >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5. 5.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4. 14 성동구청

나. 회부일자 : 2015. 4. 14

다. 상정일자 : 2015. 4. 23

(제217회 임시회 개최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

나.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 정비

다. 평생학습협의회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협의회의 기능·구성 등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

라. 평생학습관 등 운영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구 단위에는 평생학습관을 동 단위에는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13.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7조)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의회 구성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평생교육 수요 확대와 주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학습관 및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다만, 평생학습관의 지원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협의·조정하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관련기관·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